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징벌적 과징금 정비(안 제12조, 별표1의2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에 관한 법률 개정*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필요

* 판매금액 → 판매금액의 2배 상향, 위반행위의 내용, 기간, 횟수 등에 따라 고려하여 부과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정비

* (현행) 과징금 = 판매량 × 판매가격 → (개선) 과징금 = 2 × 판매량 × 판매가격

-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과징금 상향에 따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수단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관련 업무 위탁(안 제14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대상 품목 확대에 따라 검증업무에 많은 시간 소요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식품안전정보원의 위탁업무에 법 제20조의2에 따른 검증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자동화 방식의 시스템 검증 업무 위탁으로 검증의 효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과징금 납부 연기 관련 규정 정비(안 제10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,
 - 개별법에 별도로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등에 관해 중복 규정,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하위규정 정비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사유 및 기간을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삭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행정기본법과의 관계 등 체계 정비로 민원 혼란 방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